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93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영진·허영·이연희
차지호·안태준·소병훈
조승래·이정현·염태영
김성희·진성준·권칠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함.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성되었으나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등 학습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실상 전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는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등록 학교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존의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건축허가·건축신고·승인·인가 등 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이하 “기존학교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독청에 건축등이 된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이하 “당시 관계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기존학교시설이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학교시설은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승인·인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기존학교시설에 대하여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심사의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처리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3(기존의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건축허가·건축신고·승인·인가 등 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이하 “기존학교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독청에 건축등이 된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이하 “당시 관계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u></p> <p><u>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u></p> <p><u>③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기존학교시설이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학교시설은</u></p>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승인·인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기존학교시설에 대하여 당시 관계 법률에 따른 안전성 등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시설 안전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심사의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